코로나19 분자진단검사를 위한 이동형 검사실 운영지침

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mobile laboratories performing the molecular diagnosis of COVID-19

2021.08.





I. 개요1
1. 목적
2. 적용 범위1
3. 운영원칙2
4. 관련 법령
Ⅱ. 관리항목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기본 시설 요건 5
1. 이동형 검사실 규격 5
2. 이동형 검사실 내・외부 요건
검사 전 준비 7
1. 이동형 검사실 이전·설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2. 이동형 검사실 운영 전 평가8
3. 진단검사 지침서9
검사실 운영 10
1. 내·외부 정도관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2. 진단검사 관리
3. 시약 및 장비 관리
4. 인력, 시설 및 환경 관리 21
5. 검사실 안전관리23
6. 전산 관리26
Ⅲ. 참고문헌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(1) 목적

본 문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의 분자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이동형 검사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이다. 본 지침에서는 이동형 검사실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, 검사실 운영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.

2 적용 범위

본 지침은 코로나19 분자진단검사를 위한 이동형 검사실의 설치 및 운영단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, 이동형 검사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목적으로 인체 유래 검체를 이용하여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(real-time RT-PCR) 등 분자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.

이동형 검사실은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변동 요인이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협소한 공간 내에서 의료행위인 진단검사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제한점이 있다.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형 검사실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실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.

※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이 외 사항은 (재)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점검표 등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운영원칙

○ 기본 요건

• 공중보건 위기상황(코로나19 유행 시)에 한정하여 운영

○ 운영 주체

-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면서, 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·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
 - 공공기관 : 보건환경연구원 등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운영
 - 민간기관 : 우수검사실인증(분자진단)을 취득한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, 「의료법」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

○ 인력 요건

- 공공기관 : 검사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책임자*를 정하여 운영
- * (자격 요건) 감염병 병원체 확인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험실 관리 경력이 있는 공무원
- **민간기관** :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* 관리 · 지도하에 운영
 - * (자격 요건) 분자진단 또는 임상미생물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책임전문의

○ 질관리 요건

-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
 - 이동형 검사실은 중앙검사실과 별도로 외부정도평가 참여 필요
- ※ 최초 설치 시, 이동형 검사실의 질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의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

4 관련 법령

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16조의2(감염병원체 확인기관) ①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"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"이라 한다)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.

- 1. 질병관리청
- 2. 국립검역소
- 3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
- 4. 「지역보건법」제10조에 따른 보건소
- 5.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(常勤)하는 기관
- 6. 「고등교육법」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
- 7. 「결핵예방법」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(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8.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·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(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9.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
- ② <u>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·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</u>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의료법]

- 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
 - 1.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
 - 2. 의과대학, 치과대학, 한의과대학, 의학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, 한의학전문대학원, 종합 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
 - 3. 의학·치과의학·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(중략)
-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3조(개설 등)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.
 - 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
 - 2.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
 - 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
 - 4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
 - 5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
관리항목

이동형 검사실 기본 시설 요건

이동형 검사실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<u>기본적인 시설 요건</u>에 대한 사항으로, <u>검사실 규격 및 내·외부 요건</u>,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 사항을 포함한다.

이동형 검사실 검사 전 준비

건물 외부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는 특성을 가진 <u>이동형 검사실의 이전·설치 시</u> 고려 사항과 이전·설치 후 점검 사항 및 사전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.

이동형 검사실 운영

이동형 검사실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관리항목을 제시하고 있다.

- ① 내·외부 정도관리 ② 검사관리 ③ 시약 및 장비 관리 ④ 인력, 시설 및 환경 관리
- ⑤ 검사실 안전관리 ⑥ 전산 관리의 항목별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.

기본 시설 요건

(1) 이동형 검사실 규격

○ 이동형 검사실 규격

- 이동형 검사실의 규모 등은 검사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검사량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
- 이동형 검사실의 내·외부 규격 및 구조는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·변경할 수 없다.
 - ※ 임의 개조는 이동형 실험실의 압력, 온도, 안전관리 등 검사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, 이동형 검사실 제조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.

(2 이동형 검사실 내·외부 요건

○ 이동형 검사실 외부

- 이동형 검사실의 유형(컨테이너형, 트레일러형, 차량형 등)에 따른 특이사항을 검토해야 한다.
 - 컨테이너가 차량과 함께 고정되는 형태의 트레일러형 및 차량형의 경우, 바퀴 고정장치 및 별도 유압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의 외벽은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내·외부 온도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의 외벽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불연 단열재 적용을 권고한다.
- 외부에 노출된 이동형 검사실의 특성을 고려한 출입구 잠금장치를 설치·관리 해야 한다.
 - 검체 및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한 관리가 이행되어야 한다.
- 생물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도록, 이동형 검사실의 외부에는 코로나19 검사실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.

○ 이동형 검사실 내부

-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이동형 검사실은 생물안전 2등급(BSL-2) 수준 설비 및 압력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.
 - 내부공간 차압이 유지되어야 하며, 적정수준의 공조설비를 포함(헤파필터 장착 등) 하여야 한다.
- 오염 방지를 위해 내부공간은 분리되어야 하며, 검사자의 동선은 한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 - 최소한 검체 전처리, 추출과정과 증폭 과정은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○ 필수 시설 및 장비

- 이동형 검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장비가 요구된다.
 - 시설 : 공조기, 항온항습기, 외부 전력 유입단자 등
 - 장비: 생물안전작업대(BSC, Class II), 실험대, 핵산 추출장치, 유전자 증폭장치, 컴퓨터, 냉장고, 냉동고, 원심분리기, 패스박스(Pass box), 의료폐기물 처리 공간(폐기물 상자 등) 등
- 이동형 검사실에 필요한 필수 시설 및 장비는 검사실 운영 전 설치하고 검증 하여야 한다.
 - 장비는 이동 시 충격이나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정 또는 별도 운송 하여야 한다.
 - 검사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, 장비는 패드 등을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.
 - 내부공간 크기를 고려하여 적정 대수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공간을 개조하여 설치하지 않는다.

검사 전 준비

(II 이동형 검사실 이전·설치

○ 설치장소

- 이동형 검사실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- 운반 차량의 이동 및 진입이 용이해야 한다.
- 검사실 외부 규격에 따른 충분한 설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.
- 검체 채취 장소와 인접해야 하고 운반경로가 단순해야 한다.
- 최대한 평탄하고 우천 등 기후 영향이 적은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.
- 가능한 일반인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.

○ 전력공급

- 내부설비 및 장비에 충분한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상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.
- 고압 전력을 외부 인입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사고, 외부 충격 및 누전에 대한 방지책을 보유해야 한다.
- 주 전력 고장이나 공급오류에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(uninterrupted power supply, UPS) 등을 보유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 내 분전반을 설치하여 전력 구성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.

② 이동형 검사실 운영 전 평가

○ 운영 전 평가

이동형 검사실이 신규 설치 또는 이동하여 재설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.

- 시설: 검사실 내 압력, 온도변화, 전기공급 및 장비 설치위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장비 : 검사장비에 대해 기능 점검을 포함하는 성능 검증이 시행되어야 한다.
 - 장비의 성능 검증은 적절한 기능 점검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.
 - 새 제품이 설치되는 경우 검증(validation) 및 교정(calibration)을 실시한다.
 - 제조사에서 장비 이동에 관한 성능 검증 절차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따른다.
 - 장비의 점검 후,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의 성능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. ※ 아래의 사전평가 사항 참고
- 사전평가(장비, 시약, 인력 평가): 이동형 검사실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 - 사전평가는 동일한 물질을 이용하여 중앙검사실과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.
 - ※ 중앙검사실은 해당 이동형 검사실을 운영하는 검사기관(분자진단 분야 우수검사실 인증을 보유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)의 본원에 위치한 검사실을 뜻한다.
 - 사전평가는 이동형 검사실에서 실제 사용될 검사장비, 시약을 사용하여, 검사를 수행할 검사 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.
 - 비교 평가 결과는 중앙검사실 책임전문의와 이동형 검사실 책임전문의가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, 그 결과는 기록·보관되어야 한다.
 - 검사실 간 비교는 동일한 검사방법 및 결과 보고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.
 - 검사 결과의 허용범위가 설정되어 있고,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치가 있어야 한다.
 - 매 이동 시마다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이동 자체로 인해 또는 장비가 위치한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검사의 성능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.

③ 진단검사 지침서

○ 진단검사 지침서 마련 및 관리

- 이동형 검사실 설치 시 검사지침서를 마련해야 하며, 검사지침서는 검사실 운영에 관한 지침서와 검사수행에 관한 개별지침서로 나뉠 수 있다.
- '검사실운영지침서'는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순서, 보고절차, 문서관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지침을 의미하며, '개별지침서'는 검사의 원리, 임상적 의의, 검체 조건, 시약의 준비사항, 교정(calibration), 정도관리방법, 검사방법, 계산법, 참고치, 해석 등의 지침을 의미한다.
- 이동형 검사실 검사지침서의 전반적인 사항은 중앙검사실의 기존 지침을 준용 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, 중앙검사실 책임전문의와 이동형 검사실 책임전문의가 검사지침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.
- 검사지침서는 업무 중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대 근처에 비치되어야 한다.
- 모든 검사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검사에 대한 검사지침서를 숙지하였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.
- 검사 담당자의 담당 업무가 바뀌면 검사지침서를 숙지하고, 검사 책임자는 검사 담당자가 지침서를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검사지침서는 이동형 검사실의 진단검사의학과 책임전문의와 검사 담당자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, 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.

검사실 운영



11 내·외부정도관리

○ 내부정도관리

- 이동형 검사실 내에 내부정도관리(질관리, quality management) 프로그램 및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.
 - 지침서의 내용은 내부정도관리를 충실히 시행하기에 충분해야 하고, 내부정도 관리의 구체적인 허용 기준과 이를 벗어났을 경우 담당자가 취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은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내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한다. 내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.
 - ① 평가기준
 - ② 보고양식
 - ③ 내부정도관리 결과의 정확한 기록
 - ④ 내부정도관리 주기
 - ⑤ 허용범위
 - ⑥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조치사항
- 정도관리 결과는 기록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. (최소 2년)
- 매 검사마다 양성 및 음성 정도관리물질을 이용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.
- 측정한 정도관리물질의 결과가 허용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 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- 음성과 양성의 판단 기준값(cutoff)은 처음 검사를 시행할 때와 lot 변경 시 확인 해야 한다. 만약, lot 변경이 없을 경우는 6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,
- 정도관리물질의 lot 변경 또는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변경 시 정확한 결과값을 가지는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.

- 검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그 결과를 점검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.
 - LIS(검사정보시스템)를 사용하여, 심각한 사무적 착오, 분석오차 및 비정상적 검사 결과를 보고 전에 선별하는 프로그램*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.
 - * cross check 혹은 double check 시스템, delta 및 panic check 프로그램, 비현실적인 결과가 입력될 수 없도록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막아주는 automatic traps 등
 - ※ 이동형 검사실을 운영하는 기관(중앙검사실)이 LIS(검사정보시스템)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, 이동형 검사실에서도 LIS(검사정보시스템)를 적용한다.
- 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발견된 심각한 사무적 착오, 분석 오류 및 비정상적 검사결과를 적절한 시간 내에 수정하여 보고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.
 - 수정한 결과, 수정 전 결과, 수정 사유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 - 수정 전 결과와 수정 후 결과는 함께 보관해야 한다.
- 업무 교대 시 내부정도관리 결과, 기기 기능 점검 및 유지, 온도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.
- 매월 내부정도관리 기록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.
 - 전반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내부정도관리 결과가 이전의 누적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경우, 원인 분석, 대책 수립 및 이를 시행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, 이동형 검사실 책임전문의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.
 - 검사 결과의 통계자료가 책임전문의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, 필요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동일 검사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법이나 두 대 이상의 장비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, 적어도 6개월마다 검사 결과를 비교 평가해야 한다.
 - 6개월에 한 번 충분한 수의 검체를 검사하여 비교 평가하거나, 일정기간 동안 누적된 검사결과를 비교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.

○ 외부정도관리

- 이동형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(질병관리청, 대한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)에서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은 중앙검사실과 별도로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참여해야 한다.
- 외부정도관리물질은 이동형 검사실에서 환자 검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검사자가 직접 검사하고, 이동형 검사실 책임전문의는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보고해야 한다.
 - 이동형 검사실 조직도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이 검사에 참여하거나, 중앙검사실 등 외부에 외부정도관리물질의 검사를 요청 또는 결과를 문의해서는 안된다.
 - 기관의 운영내규 상, 결과의 최종 제출을 위해 중앙검사실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도 중앙검사실은 이동형 검사실 외부정도관리 결과 제출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과정이나 내용에 관여할 수 없다.

○ 질향상

- 이동형 검사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검토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은 공급 시약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문제에 대한 제조사의 안내 사항에 대하여 관리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은 검체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아래의 주요 지표(key indicators)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.
 - ① 검체 인지 실수율
 - ② 검사 처리기간*(TAT, turnaround time)
 - * 검사의뢰부터 결과회신까지 소요되는 시간
 - ③ 결과 수정률
- 검사 전반의 기록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.
 - 검사의뢰서, 결과보고서, 내부정도관리기록, 외부정도관리기록, 장비 보수 기록 등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.
 - 기록의 손상, 손실, 분실, 또는 무단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보관 환경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.

(2) 진단검사 관리

○ 검체 접수

• 이동형 검사실에서 검체 접수 시 검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.

〈권장 사항〉

- 바코드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검체에는 적어도 성명과 관리번호(병록번호 등)를 표시해야 한다.
- 검체를 접수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.
- 의뢰된 검체 용기에는 검체 식별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식별자(identifier)가 부착되어야 한다.
 - 검체 용기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검체 검사를 의뢰한 기관과 검사 대상, 채취 일자 그리고 검체 종류 등을 추적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.
 - 적절한 식별자(identifier) 표기 및 부착 방법이 지침에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.
- 검사를 시행하기에 부적합한 검체 기준 및 검사 거절기준이 있어야 하며, 이는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
- 검사의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.
 - ① 검사 대상자의 신원 정보(성명, 등록 번호)
 - ② 의뢰 의료진의 성명,
 - ③ 의뢰 기관명과 기관식별정보(동일 기관이 아닐 때)
 - ④ 의뢰된 검사명
 - ⑤ 검체 채취 일자와 시간
 - ⑥ 검체 종류

○ 검체 처리 및 보관

- 검체 보관조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.
- 전체는 핵산의 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처리해야 하며, 보관 시 적정 온도
 (4℃)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원래 검체 용기로부터 분주한 검체인 경우, 검체가 그 검사 대상자의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.
 - 확인을 위한 검체 식별정보는 각 검체 당 최소 두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(예, 성명, 생년월일, 관리번호(병록번호) 등).
- 자검체(분주된 검체), 검체 분실, 변질 또는 오염 방지에 대한 지침이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
- 검사수행의 각 단계에서 검체의 식별정보를 확인해야 한다.

① 검체 접수 ② 핵산 추출 ③ 유전자 증폭 ④ 검출(detection) ⑤ 보관

○ 검사관리(핵산 추출, 유전자 증폭 및 검출)

- 검사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법 등을 검토하여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,
 이에 따라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.
- 검사 과정의 제반 사항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.
 - 검사 대상자의 정보 및 결과(raw data 등)를 추적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.

 ※ 동일 검사를 여러 기기로 수행하는 경우. 검사를 수행한 기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
- 핵산 추출 및 유전자 증폭 과정에 상용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, 제조사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.
- 핵산 추출 및 유전자 증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.
- 핵산 추출과 유전자 증폭 과정은 반드시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- 핵산 추출 과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, 장비 내·외부 및 실험대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.

- 유전자 증폭 과정에서 양성 대조물질이나 양성검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※ [참고] COVID-19 분자진단검사 Q&A 제 5판 (대한진단검사의학회&질병관리청)
- 핵산 추출 실패나 저해물질(inhibitor)에 의한 위음성반응을 검출하기 위해, 모든 유전자 증폭 반응 시 내부 대조물질(internal control)도 함께 반응시켜야 한다.
- 핵산 추출 또는 유전자 증폭 반응 실패 시 시행하는 조치가 지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
○ 검사결과 보고

- 검사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.
 -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판독, 보고하는 절차가 지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 - ① 결과 보고 매체(서류, 전자문서 등), 보고서 양식, 보고자, 피보고자, 보고기한
 - ② 정확한 결과 기록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
 - ③ 부적합 검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체로 결과 보고를 하는 경우 그 절차
 - ④ 중간 보고, 구두 보고 및 수정 보고
- 검사별로 검사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.
 - 전산화된 검사실의 경우, 전산 화면에서 검사의 현재 상황(접수, 검사 진행 중, 중간결과 보고, 보고 완료 등)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- 필요시 신속하게 중간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.
 - 중간결과 보고 시간, 내용 및 보고 방법(구두, 전화, 이메일, 서면보고 등)은 최종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.
- 최종 보고서는 검사방법, 결과정보, 객관적 검사소견과 해석 등이 읽기 쉬운 형태로 기술되어야 한다.
 - 최종 보고서에는 이동형 검사실의 검사 당시 위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, 이동형 검사실에서 검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 이는 전산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해당한다.
 - 부적합 검체로 검사하는 경우, 보고서 및 장부에 검체의 특성을 표시해야 한다.

- 분자진단검사의 최종 결과가 다른 검사결과 또는 임상양상과 다른 경우는 이를 비교 분석하고, 필요하다면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검사 결과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, 결과보고서를 무작위 추출하여 확인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.
 - 주기 및 방법 등은 중앙검사실의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검사에 대한 처리기간(TAT) 한계를 정하고,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.
 - 검사 처리기간(TAT)의 정기적 검토를 위하여, 검체 접수 및 보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.
- 최종 보고서(원본 또는 복사본), 결과 기록지 등은 중앙검사실 및 이동형 검사실에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.
 - 최종 보고서 등은 통보한 결과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한다.
 - 결과를 전산으로 통보하는 경우 서면 결과지가 아닌 전산 결과의 보관도 가능하다.
 - 보관기간은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15조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.

✓3 시약 및 장비 관리

○ 시약

-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시약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에서의 체외 진단 용도로 정식 허가된 제품이어야 한다.
- 시약은 제조회사가 제시한 조건(온도 등)을 준수하여 공급·보관되어야 하며, 설명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.
- 모든 시약에 내용물, 개봉 일자, 유효기간, 보관조건 등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.
- 여러 개의 시약으로 구성된 키트 형태의 제품은 제조회사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, 동일 키트 내의 시약만 사용해야 한다.
- 모든 시약은 정해진 폐기 일자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.
- 시약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시약의 lot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, 검체를 이용하여 비교 평가해야 한다.
 - 새로운 시약의 검사 결과가 기존 시약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, 검사에 사용해야 한다.
- 시약을 점검하였던 기록은 모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.
- 검사 결과의 해석과 오류발견 및 문제해결(troubleshooting)을 위해 검사에 사용된 시약의 특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
○ 장비(공통사항)

- 각 장비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.
 - 지침서는 검사장비의 켜기, 작동, 끄기 및 기능 점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 또한, 지침서는 검사 담당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.
- 각 검사장비의 기능 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가 있어야 한다.
 - 장비 점검 또는 유지보수 기록부에는 장비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정기 및 비정기 점검 사항과 이동형 검사실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 사항들이 시행되고 기록 되어야 한다. 이는 전기적, 기계적, 조작 상의 점검 등을 모두 포함한다.
 - 점검 절차와 주기는 제조사의 지침을 따른다.
 -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대한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, 지침에는 장비 제조사 및 담당자 연락처, 보수 시 필요한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.
- 각 검사장비의 수리 지침서(문제해결 사항 포함)와 수리 및 서비스 내역 장부가 있어야 한다.

① 주요 장비

- 이동형 검사실에서 주요 장비에는 핵산 추출장치와 유전자 증폭장치가 해당된다.
- 주요 장비에 대한 지침서에는 공통사항에 제시한 사항 외에 검사수행 발생 가능한 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각 주요 장비는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.
- 핵산 추출장치는 자동화 장비를 권장하며, 처리하는 검체에 적합한 전용 시약을 사용해야 한다.
- 핵산 추출장치는 이동설치 후 장비 외관 및 작동을 점검하고, 기능에 대한 교정(calibration)*을 실시해야 한다.
 - * Heating block 온도, UV 작동, 반응시스템 정렬(alignment) 등을 점검
- 유전자 증폭장치는 각 well의 온도 및 제조사에서 기기 설치 시 권장하는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.

② 일반기구 및 장비

- 이동형 검사실에서 일반기구 및 장비에는 원심분리기, 자동피펫, 온도관련기구, 생물안전작업대(BSC, biosafety cabinet)가 해당된다.
- 원심분리기의 관리 지침서에는 주로 사용하는 용도의 g값과 해당 rpm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,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 - 이동형 검사실 설치 시점 및 분기별로 회전속도계(tachometer)를 사용하여 원심분리기 작동 속도 및 타이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 - 원심분리를 위해 bucket 및 rotor에 원심관을 넣거나 빼내는 작업 시에는 물리적 밀폐 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을 사용한다.
- 자동피펫은 사용 전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, 이후에도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 (분기별 점검을 권장) 주기적으로 정확성을 점검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.
- 일반 온도계 설치 시 표준온도계로 검증 후 사용해야 한다.
 - 일반온도계 및 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온도계는 표준온도계와 비교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 - 냉장고, 냉동고 등의 온도점검이 각 장비별로 매일 또는 검사 시행일마다 이루어져야 한다.
 - 모든 온도 관련 기기 (냉장고, 냉동고 등)에는 온도의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경우, 취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한 지침 및 시행기록이 있어야 한다.
- 생물안전작업대(BSC, Class II 등급 이상)는 일정 규격(KSJ0012, EN12469, NSF49)의 성능시험 및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.
 - 연 1회 이상 필터의 성능과 유속 등을 점검해야 한다.
 - ※ [참고] 질병관리청 실험실 생물안전지침(2019)

(4) 인력, 시설 및 환경 관리

○ 검사실 인력

- 운영내규 및 조직도가 있어야 한다.
 - 이동형 검사실의 운영내규는 중앙검사실의 관련 내규를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.
 - 모든 검사실 직원의 책임, 권한, 직무 등을 규정한 직무기술서와 조직도를 비치하고 공유해야 하며, 조직도에는 중앙검사실 책임전문의, 이동형 검사실 책임전문의, 직무별 책임자 등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모든 검사실 직원은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
 - 모든 직원들의 자격증(원본 또는 사본)이 이동형 검사실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을 담당하는 책임전문의는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, 한 장소의 이동형 검사실을 대상으로 각각 주 20시간 전담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.
 - 전담 업무 시간에는 타 업무를 중복으로 담당할 수 없고, 전담 업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마련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을 담당하는 책임전문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하며, 이동형 검사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책임과 권위를 위임받고 있어야 한다.
 - 이동형 검사실 책임전문의는 주 검사실과 동등한 경력요건과 교육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의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정수의 임상병리사가 상근하고 있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의 임상병리사는 업무와 관련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,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전문 교육(예.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등)을 이수해야 한다. (매 2년마다 1회 이상)

○ 시설 및 환경

- 이동형 검사실 공간은 업무수행 및 안전관리에 충분해야 한다.
 -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해야 하며, 곤충 등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.
- 바닥, 벽, 천장과 작업대는 청결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 단전에 대비하여 비상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.
 - 이동형 검사실의 전력공급은 내부 기기의 운용에 충분해야 한다.
 - 무정전전원공급장치(uninterrupted power supply, UPS) 또는 자가발전전력과 연결된 장비 목록과 배치도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.
 - 검체용 냉장고, 냉동고 및 incubator 등에 대해서도 비상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도록 권장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의 실내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.
 - 검사실의 적정 실내온도는 18~26℃, 습도는 30~70%를 권장한다(CLSI GP18-A).
 - 검사실 내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구비해야 하며 점검표는 반드시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.

(5) 검사실 안전관리

○ 생물안전등급(Biosafety level)

- 코로나19 분자진단검사를 위해 운영되는 이동형 검사실은 생물안전 2등급 (BSL-2)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, 생물안전작업대(BSC)는 Class II 등급이상의 인증된 제품을 검증(validation)하여 사용해야 한다.
 - ※ 추출 완료한 핵산만 다루는 경우 1등급(BSL-1), 바이러스 균주를 다루는 경우 3등급(BSL-3) 권장
- 다음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(BSC, Class Ⅱ 등급 이상)에서 시행한다.
 - 검체의 자검체 분주(aliquoting) 또는 희석
 - 감염성 검체의 핵산 추출 과정
 -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절차(예, 보텍스 교반)
- 생물안전작업대(BSC)에서 검체를 처리한 후에는 작업 공간과 장비를 질병관리청 지침에서 권장하는 소독제로 소독한다.
- 생물안전작업대(BSC)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관련 절차는 최소화하여 시행하다.

○ 검사실 감염관리

- 이동형 검사실 감염관리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,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검사실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.
- 운반 도중 유출 방지를 위해 체액을 포함한 검체의 채취, 운반, 조작에 대한 지침과 오염된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의 처치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.
- 검사실에서 감염 원인균에 노출된 상황에 대한 조치 및 추적 관찰 지침이 있어야 한다.
- 개인보호구(장갑, 가운, 마스크, 안보호대, 신발)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.
 - 검사업무용 가운 : 검사실 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착용해야 하며, 검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용건으로 검사실 외부로 나갈 때 착용하지 않는다.
 - 장갑 : 검체 혹은 위험 물질을 직접 다루는 직원은 반드시 착용한다.

- 마스크 : 감염성 검체를 다루는 직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.
- 안보호대 : 검체 뚜껑을 개봉하는 직원은 반드시 착용한다.
- 신발 : 발 앞부분이 막힌 것을 착용한다.
- 검사자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검물을 다룰 때 표준주의(standard precaution)를 준수한다.
 - 일회용 장갑과 가운(몸 전체를 덮음, 긴 팔, 뒤트임) 착용, 마스크와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(검체 용기를 개봉하여 튈 염려가 있을 때 착용, 안경과 함께 착용하는 경우 안경 위에 착용)를 사용한다.
- 감염성 검체와 접촉하는 소모품은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한다.
- 검사 완료 후 반드시 보호구를 모두 벗고 손 위생을 실시한 후 검사구역을 퇴실한다. 보호구를 벗을 때 손이나 몸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 - 모든 검사실 직원은 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체를 취급한 후에도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한다.

○ 검사실 안전관리 일반사항

- 이동형 검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,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검사실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.
 - 이동형 검사실의 안전 규정과 지침은 「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중앙검사실의 내규를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.
 - 안전 규정과 지침은 주기적으로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.
 - 안전 규정과 지침은 검사실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한다.
 - 안전 경고 표시가 필요한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.
- 안전 사건/사고를 평가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- 모든 이동형 검사실 사고를 기록 보관하기 위한 지침과 그에 따른 실시 기록이 있어야 한다.

- 모든 작업구역에서 흡연, 취식, 음료, 화장, 입술연고, 콘택트렌즈 사용, 입을 이용한 피펫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.
 - 검사실 냉장고 안에는 부적절한 물질(음식물, 개봉된 휘발성 물질 등)이 없어야 하며, 냉장고 앞에 음식물반입금지에 대한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.
- 화재 등 비상시 장애인을 포함한 직원, 방문자 등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원 대피시킬 수 있는 문서화 된 계획 및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.
 - 비상시 탈출을 도와줄 만한 충분한 비상등이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.
 - 검사실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.
 - ▶ 의료기관의 소화기 설치기준은 바닥면적 50m² (15평)마다 소화기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다. 참고로 ABC 축압식 분말소화기 3.3kg은 3단위이다(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).
- 전기 장비의 안전 조작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.
 - 모든 장비의 접지 상태가 충분해야 하며, 누전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 - 전기 장비의 안전에 대한 교정작업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.
- 자외선 발생장치 사용 시 노출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.
 - 자외선 사용 시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고, 장치에는 안전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.
- 유해 폐기물 수거 및 적법한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.
- 모든 감염성 폐기물은 환경부의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3판)'에 따라 처리한다.
 - 음성이 확인된 잔여 검체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일상적인 검사의 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.
- 폐기물을 보관하는 공간은 곤충 등 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, 보안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한다.

6 전산관리

○ 검사실 전산관리

- 이동형 검사실 내의 컴퓨터와 연결된 배선은 적절하게 되어 있고, 보호관 (conduit) 안에 정리되어 주위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- 검사실 정도관리용 프로그램은 LIS(검사정보시스템)의 일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. LIS 지침서, 컴퓨터 사용지침서가 문서화 되어야 하며,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.
 - 사용자 지침서는 이동형 검사실 각 부서에 있어야 한다.
 - 전산실에 기술적인 지침서와 시스템 운영지침이 있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 책임전문의는 LIS 사용지침서를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.
-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사 대상자 데이터에 접근하고 결과를 수정해야 하며,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각각 명확히 규정한 지침서 및 권한 위임 증서가 있어야 한다.
- 작성된 모든 보고서의 내용과 양식은 이동형 검사실 책임전문의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.
- 결과 입력·수정 또는 파일, 프로그램 수정을 이행한 모든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.
 -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입력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- 화재, 천재지변,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고장 등의 경우에 데이터와 장비의 보존을 위한 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한다.
- 재난의 확대를 막는 절차나,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및 저장 규약, 오프-사이트(off-site) 백업 장치, 백업된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복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.
 -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변경 시에는 이러한 지침서의 재검토 및 갱신이 필요하다.

- LIS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사용자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.
- 이동형 검사실에서 검사정보 등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, 데이터 무결성 검증 등 자료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참고문헌

-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[법률 제17642호] (2021.6.16.)
- 2. 「의료법」[법률 제17787호] (2020.12.29.)
- 3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(2020.6.30.)
- 4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[법률 제17350호] (2020.6.9.)
- 5.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점검표, 대한진단검사의학회&진단검사의학재단, 2021
- 6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실 진단 지침(제4판), 대한진단검사의학회&질병관리청, 2020
- 7. COVID-19 분자진단검사 Q&A(제5판), 대한진단검사의학회&질병관리청, 2021
- 8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, 질병관리청, 2021
- 9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기관 감염예방 · 관리,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, 2020
- 10. 실험실 생물안전지침, 질병관리청, 2019
- 1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3판), 환경부, 2020
- 12.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. Laboratory Instrument Implementation, Verification, and Maintenance; Approved Guideline. CLSI Document GP31-A.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, Wayne, PA; 2009.
- 13.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. Laboratory Design; Approved Guideline—Second Edition. CLSI document GP18-A2.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, Wayne, PA; 2007.
- 14. World Health Organization. Regional Office for Europe. (2021). Guidance for rapid response mobile laboratory (RRML) classification. World Health Organization. Regional Office for Europe. https://apps.who.int/iris/handle/10665/339845.